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9. 20 선고 2017가단1467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변론 종결 2018. 8. 30

판결 선고 2018. 9. 20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B 사이의 2014. 12. 12.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D과 피고 C 사이의 2014. 12.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D에게,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4. 12. 12. 접수 제136396호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C은 같은 등기와 2014. 12. 12. 접수 제13639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0월경 D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차량할부대금 합계 221,377,239원 을 상환하였고, 2014. 11. 13.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5997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D은 2014 . 12. 1. 위 가압류사건의 기록에 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4. 12. 2.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나. D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문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가단1405호로 D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차량할부 금을 원고가 상환함으로써 입은 손해금 158,121,491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1. 1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고 B는 D의 친구, 피고 C은 D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갑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위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D과 피고들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일한 재산에 관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그리고 피고들의 악의 즉 피고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정된다.

나.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부터 D에게 돈을 빌려 주어 대여금에 대한 담보 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 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인 피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피고들이 D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D과 피고들 사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원정숙

별지